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11.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2023. 11. .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임미연 의원 외 9명(이영빈, 이진환, 도하석, 박정환, 김해철, 장호섭,김장관, 박종길, 고명욱)
- 발의일자: 2023. 11. 3.
- 회부일자: 2023. 11. 3.
- 검토기간: 2023. 11. 6. ~ 11. 10.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및 제도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 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3. 11. 3. ~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 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6조제1항은 기존에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6조제3항은 의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결로 공소의 건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의식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달서구의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
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